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지 방 공 무 원 복 무 규 정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일·가정 양립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
집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
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
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를 부여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6제10호 중 “참석할”을 “참석하거나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5조에 따른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되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”로 한다.
제7조의7제9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는 제외한다)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6(공가)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(제10호의 경우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.	제7조의6(공가) (현행과 같음)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(選任)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(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, 연 1회로 한정한다)에 <u>참석</u> 할 때	10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참석하거나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5조에 따른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되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</u>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~ ⑧(생략)	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~ ⑧(현행과 같음)
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 1.·2. (생략) <신설> 3.·4. (생략)	⑨ (현행과 같음)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는 제외한다)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 4.·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57